

9. 都市計画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7-329호 1997. 9. 13

주요 골자

가.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.

개정 이유

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

주택회보